

노고산동종합복지센터건립부지추가매입(안) 심 사 보 고 서

2005. 9. 2.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 8. 23.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5. 8. 29.
- 다. 상정일자 : 제11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05. 9. 2)
상정, 심사, 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 2004. 12월 서울시로부터 노고산동 청사 및 종합복지센터 건립용 부지로 매입한 노고산동 1-50호 및 1-83호 부지 사이에 약 45.7평의 사유지(노고산동 1-49호)가 있어 복지센터 설계상문제, 일조권문제, 경계선 옹벽문제 등이 있어 동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추진경위

- 동 사유지가 복지센터 건립부지 사이에 위치한 관계로 신축건물 설계시 경계선 이격으로 인한 설계상문제, 토목 공사시 CIP(지하 옹벽) 보강공사 비용발생, 대지의 고도차이에 따른 옹벽설치 비용발생 등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며,

또한, 종합복지센터용 단지내에 작은 개인용 토지를 그대로 두고 건립할 경우 공사의 애로사항은 물론 건물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어 동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

다. 재산취득

일련 번호	재산의표시		면적 (㎡)	추정가격 (단위: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1	대지	노고산동 1-49	151.1	770,000	2005	종합복지관건립 부지 추가확보	노고산동 1-49 방두지	매입
2	건물	노고산동 1-49	282.41	780,000				

3.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본 건은 지방자치법(2005-8-4 법률제7670호)제35조제1항 및 사회복지사업법(2005-7-13 법률제7587호)제34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추가매입(안) 주요골자를 보면, 취득재산은 마포구 노고산동 1-49 대지 151.1㎡(건물 282.41㎡)로서 동 사유지가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신축건물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
-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는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무소, 보훈회관이 하나의 시설로 통합된 새로운 개념의 복지시설로서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등 사회보호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 재활, 교육 및 훈련, 정보제공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전담할 사회복지사무소를 통해 복지수요 파악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향후 동 시설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토지매입비와 건축 및 설계비 등 모든 사업비를 자치구비로 부담할 경우 재정압박을 초래하는 바, 서울시와 적극 협의를 통하여 특별교부금 및 연간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현대 사회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노인의 빈곤, 질병, 고용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화, 핵가족화의 보편화에 따른 편부모 가족의 증가 및 신 빈곤층의 대두 등 사회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지역특성에 맞고 전문화된 복지정책의 수립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마포구는 향후 상암동 DMC사업, 아현뉴타운 사업 및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질적·양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구의 사회복지시설은 충분한 공급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서울시는 각 구별로 인구 10만명당 1개소의 종합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40만에 가까운 인구에도 불구하고 주요 복지시설은 중규모인 “나”형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사랑의전화, 성산종합사회복지관)가 있고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구립시설인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가 있어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구립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매입에 드는 비용 332억원을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답변요지(김정호 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5. 토론요지 : 없음**6. 심사결과 : 원안가결****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8. 기 타 : 없음**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5. 8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2004.12월 서울시로부터 노고산동 청사 및 종합복지센터 건립용 부지로 매입한 노고산동 1-50호 및 1-83호 부지 사이에 약 45.7평의 사유지(노고산동 1-49호)가 있어 복지센터 설계상문제, 일조권문제, 경계선 옹벽문제 등이 있어 동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

2. 추진경위

동 사유지가 복지센터 건립부지 사이에 위치한 관계로 신축건물 설계시 경계선 이격으로 인한 설계상문제, 토목 공사시 CIP(지하옹벽) 보강공사 비용발생, 대지의 고도차이에 따른 옹벽설치 비용발생 등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며,

또한, 종합복지센터용 단지내에 작은 개인용 토지를 그대로 두고 건립할 경우 공사의 애로사항은 물론 건물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어 동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

3. 재산취득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면적 (㎡)	추정가액 (단위: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1	대지	노고산동 1-49	151.1	770,000	2005	종합복지관 건립부지 추가확보	노고산동 1-49 방두지	매입
2	건물	노고산동 1-49	282.41	780,000				

4. 근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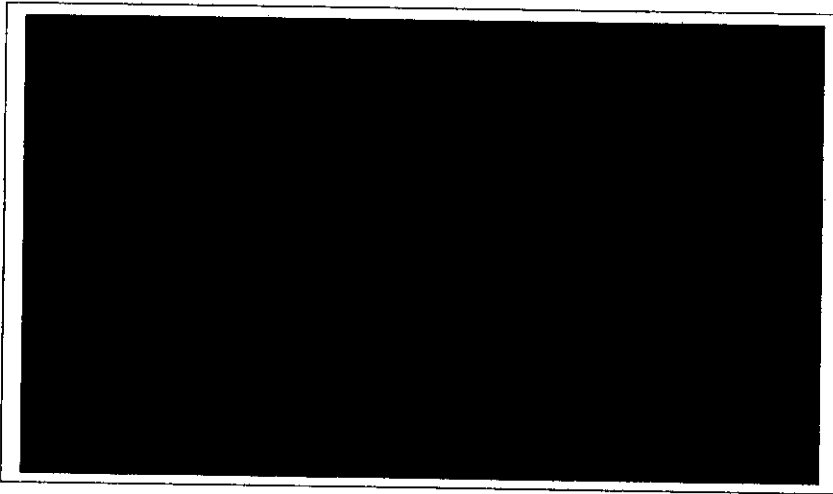
-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 - 구청장 방침 제921호(2004.8.16)
- 노고산동 청사 및 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 - 구청장 방침 제921호(2005.7.21)
-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추가 매입계획 - 구청장 방침 제817호(2005.7.18)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안)

1. 물건확보(예정) 재산현황

구분	위치	지목	면적(m ²)	물건확보	소유자	비고
취득	토지	노고산동 1-49	대지	151.10	매입	방두지
	건물	노고산동 1-49		282.41-연면적 (지하1,지상3)	매입	방두지

2. 위치도



3. 현장사진

